

[붙임2]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1)금융 및 보험업

2)부동산업

3)숙박 및 음식점업

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

4)무도장 운영업

5)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
6)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

7)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
8)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